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52
----------	-----

2019년 4월 19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2월 18일, 김기덕 의원 외 21명 발의
- 나. 회부일자 : 2019년 3월 12일
- 다. 상정일자 :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9년 4월 19일 상정·수정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김기덕 의원)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영구시설물 축조와 관련하여 관련 법규 미비에 대한 법적 안전성을 확보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규정에 따라 철거에 필요한 비용 등을 미리 공탁하게 하여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함(안 제 25조의3제1항)

- 영구시설물 축조시 철거비용부담확약서를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공탁 또는 예치하도록 함(안 제25조의3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 1)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4.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김선희)

가. 개요

- 본 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해당 시설의 철거에 필요한 비용 등을 미리 공탁하게 하여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검토의견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현황

- 현행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함) 제2조에서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 “재생에너지”란 햇빛·물·지열(地熱)·강수(降水)·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 각각 정의하고 있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현황〉

신에너지(3종)	재생에너지(8종)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 액화·가스화 및 중질산사유 가스화 에너지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 에너지, 바이오에너지, 폐기물에너지, 수열에너지

2) 의회 동의 규정 신설 관련(안 제25조의3제1항)

- 법 제26조제2항 단서에서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제처 법령 해석례¹⁾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조례를 마련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기

1) 14-0857, '15.1.15

전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없다고 제시하고 있음.

- 따라서 상위법 규정 및 법제처 법령 해석례를 준용하여 안 제25조의3제 1항과 같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함) 시설 중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해당 사항을 조례에 규정 하여 법규 미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다만, 부칙 제2조의 경우 현행 조례 시행 당시 축조 중인 신재생에너지 영구시설물 뿐만 아니라 기축조된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도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경과조치를 두어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 한편,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설치에 대한 의회 동의에 있어서 태양광발전 시설과 같이 일부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고 명확히 정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일례로 자치단체별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제각각이며, 서울시의 경우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영구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간주²⁾하여 공유재산 사용 및 대부요율 산정에 관한 사항 외에 의회 동의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제25조제4항).

〈태양광발전시설 의회 동의 규정 여부〉

구 분	의회 동의 규정	의회 동의 미규정
시·도	대전시, 충청북도	그 외 시·도
교육청	서울시교육청, 강원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그 외 시·도교육청

2) 서울시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철거·해체가 용이한 특성을 감안, 자진철거 및 임대기간(최대 20년)을 명시하고 민간 발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영구시설물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18.4.30), 산업통상자원부('18.5.14)는 기관 홈페이지에 기재된 민원 내용에 대하여 태양광발전시설이 영구시설물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한 바 있지만,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 경기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 공식 질의³⁾('18.12.5)를 하였음.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경기도 질의에 대해 법령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제처에 다시 질의를 하였고, 법제처는 “태양광발전시설이 영구시설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발전시설의 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19.1.10)한 바 있음.

이에 서울시는 법제처의 회신 결과에 근거하여 태양광발전사업자의 혼란을 막고 공유재산 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지난 3월 15일 태양광발전시설은 영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2) 철거비용 공탁 또는 예치 규정 신설 관련(안 제25조의3제2항)

- 법 제26조제2항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 제25조의3제2항과 같이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철거비용부담확약서를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공탁 또는 예치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별도의견은 없음.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의 영구시설물에 태양광발전시설이 해당하는지?

[참고사항]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隨意契約)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조례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 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수정안 요지

- 안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중 현행 조례 시행 당시 축조 중인 신재생에너지 영구시설물 뿐만 아니라 기축조된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도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여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8. 심사결과 : 수정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452
----------	-----------

제안년월일 : 2019년 4월 19일
제안자 : 환경수자원위원장

1. 수정이유

- 안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 중 현행 조례 시행 당시 축조 중인 신재생에너지 영구시설물 뿐만 아니라 기축조된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도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하여 조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2. 주요 골자

- 안 부칙 제2조의 경과조치에 기축조한 영구시설물에 대해서도 의회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함.

3. 참고사항 : 생략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부칙 제2조(경과조치) 중 “축조 중인”을 “축조하였거나 축조 중인”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제25조의2(의견청취) 시장은 제2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산정 공고하는 경우 <u>서울특별시</u>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용 및 대부요율을 인하·동결하거나 전년도(해당 대부요율이 적용되는 그 해의 직전 년도를 말한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로 인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25조의2(의견청취) ----- ----- ----- <u>서울특별시</u> <u>의회(이하 “의회”라 한다)</u>- ----- ----- ----- ----- ----- ----- ----- ----- -----</p>	<p>제25조의2(의견청취) (개정안과 같음)</p>
<p>〈신 설〉</p>	<p>제25의3(의회동의) ① 「<u>신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u>」 제26조 제2항에 따라 <u>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p> <p>② 제1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u>시장 명의의 철거비용부담</u> <u>확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공탁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u></p>	<p>제25의3(의회동의) (개정안과 같음)</p>
<p>〈신 설〉</p>	<p>부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p>	<p>부칙</p> <p>제1조(시행일) (개정안과 같음)</p>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영구시설물
축조 사전 승인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중전의 조례에 의하여 축조
중인 영구시설물은 이 조례
제25조의3에 따라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제2조(경과조치) (영구시설물
축조 사전 승인에 관한 경과
조치) -----
----- 축조
하였거나 축조 중인 -----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 본문 중 “서울특별시의회”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로 한다.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의3(의회동의) 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시장 명의의 철거비용부담확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공탁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영구시설물 축조 사전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축조하였거나 축조 중인 영구시설물은 이 조례 제25조의3에 따라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의2(의견청취) 시장은 제25조 제4항 단서에 따른 사용 및 대부요율을 산정 공고하는 경우 <u>서울특별시</u> <u>의회</u>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사용 및 대부요율을 인하·동결하거나 전년도(해당 대부요율이 적용되는 그 해의 직전 년도를 말한다) 소비자물가상승률 이내로 인상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25조의2(의견청취) ----- ----- ----- <u>서울특별시</u> <u>의회</u>(이하 “의회”라 한다)----- ----- . ----- ----- ----- ----- .</p>
<p>〈신 설〉</p>	<p>제25의3(의회동의) ① 「<u>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u>」 제26조제2항에 따라 <u>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u></p> <p>② 제1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u>시장</u> 명의의 철거비용 부담확약서를 <u>재산관리관</u>에게 제출하거나 철거비용을 공탁 또는 예치하여야 한다.</p>